

kotra 통상정보

제42호 [14-42] 2014.12.24 Biweekly Report

주간 포커스

한-콜롬비아 FTA, 콜 국회 비준 완료

주요국 통상 이슈

- I. FTA · 통상정책
- II. 통관 · 수입규제
- III. TBT
- IV. 기타무역장벽

통상 캘린더



Contents

1 주간 포커스

한-콜롬비아 FTA, 콜 국회 비준 완료

2 주요국 통상 이슈

I. FTA · 통상정책

■ FTA 등 지역협정

- 일본-터키 제1차 EPA협상 종료
- 말레이시아, 제2차 동방정책 관련 협력 모색
- 일-EU EPA 제8차 협상회의 종료
- 미국, 쿠바와 국교 정상화 발표
-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가서명

■ 무역 · 산업정책

- 베트남, 투자법 · 기업법 · 주택법 개정안 확정
- 일본, 아르헨티나산 리튬 생산프로젝트 지원
- 러시아, '15년 연두교서 발표
- 인도, 방위산업 오프셋 정책 완화 추진
- 일본, 우크라이나 내 친러시아파 자산동결
- 인도, 의료기기 분야 FDI 논의
- 브라질, 사회보장세 및 공업세 인상 고려 중

II. 통관 · 수입규제

■ 통관절차

- 중국, 독일산 철판류 상품 검사검역 실시

■ 수입규제

- 카자흐스탄, 러시아산 주류 수입금지 해제
- 미얀마, 자동차 수입조건 변경안 발표
- 이탈리아, 과일탄산음료의 과일즙 농도 상향조정법 발효 예정
- 미국, 화학물질 신규사용에 대한 수입규제 시행

■ 세이프가드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 터키, 수입산 벽지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 이집트, 수입산 자동차 배터리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 반덤핑 · 상계관세

- 중국, 한국 등 4개국 클로로포름 반덤핑 조치 종료
- 미국, 중국산 에어컨용 스톱밸브 덤핑 행정재심 최종판정
- 일본, 중국산 TDI 반덤핑 산업피해 예비판정
- 브라질, 중국산 PET필름 임시 반덤핑 관세 부과
- 우크라이나, 중국산 스테인리스 강관 반덤핑 관세 부과
- 브라질, 중국산 비단조 금속마그네슘 반덤핑 일몰재심 조사 개시
- 중국, 대만 등 2개국 1,4-부탄디올 반덤핑 조치 종료
- 멕시코, 중국산 믹서기 덤핑 최종판정
- 인도, 중국산 노일실크 반덤핑 조사 개시
- EU,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 반덤핑 조사 개시
- 중국, EU 등 2개국 혈액투석기 반덤핑 조사 종료
- 멕시코, 중국산 와이어로프 덤핑 최종판정
- 인도, 중국산 아질산나트륨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 연장
- 미국, 중국산 멜라민 반덤핑 · 보조금 조사 개시
- 캐나다, 중국산 태양광패널 반덤핑 · 보조금 조사 개시
- 미국, 중국산 차아염소산칼슘 덤핑 · 보조금 최종판정
- 캐나다, 한국 등 3개국 철근콘크리트 덤핑 · 보조금 최종판정

III. TBT

■ 기술규제

- 미국, 임산부 의약품 구성성분에 대한 라벨링 최종규정 발표
- 미국, 어린이용 레이저 장난감 가이드라인 발표
- 캐나다, 미용 목적 콘택트렌즈 규제 변경
- 인도네시아, 강제인증 품목 확대 및 라벨규정 강화 예정
- 캐나다, 수소불화탄소 규제 강화계획 발표

IV. 기타무역장벽

■ 서비스장벽

- 미국, 신규 외국인직접투자 설문제출 의무화 재개

■ 지식재산권

- 미국, 동축케이블 접속기에 337조사 시행기로 결정
- 미국, 3D 극장시스템에 337조사 시행기로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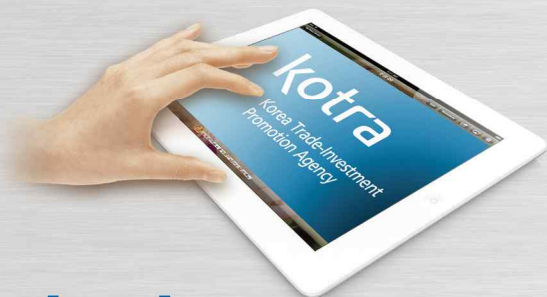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3 통상 캘린더

4 설명회 개최 안내



1 주간 포커스

한-콜롬비아 FTA, 콜 국회 비준 완료

출처 : KOTRA 글로벌 윈도우

본 원고는 KOTRA 글로벌 윈도우 심층보고서 「한-콜롬비아 FTA 효과 및 활용방안」 및 통상속보의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2.6.25일 한-콜롬비아 FTA 협상이 타결되었으나 콜롬비아 자동차 산업계의 반대 및 콜롬비아 대선 시기와 의회 비준 시점이 겹치며 국회 비준이 지연되어왔다. 한국이 지난 4.29일, 콜롬비아가 12.16일 국회 비준을 완료함에 따라 한-콜 FTA는 2015년 중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각국과의 양자 FTA가 하나둘 발효되는 가운데, 우리는 각국 FTA 수혜분야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진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KOTRA에서는 한-콜롬비아 FTA 주요내용 및 수혜분야를 정리해보았다.

I. 한-콜롬비아 FTA 발효 예정

□ 한-콜롬비아 FTA, 양국 국회 비준 동의안 의결 완료

- 한국 국회, 한-콜 FTA 비준 동의안 의결(4.29)
 - 양국은 지난 ‘09.12월 협상 출범 이후 총 7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13.2월 협정문에 서명함.
 - ‘14.4.29일, 한국 국회 비준 완료
 - 콜롬비아 국회, 한-콜 FTA 비준 동의안 의결(12.16)
 - ‘14.12.15 콜롬비아 상·하원 최종 통과로 의회 승인 완료
 - 콜롬비아 국내법상 FTA 최종 승인을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승인 절차도 밟아야 함.
 - 양국 법적 절차 완료 후 2015년 하반기 발효 전망
- * 협정문 제 22.4조에 의거 동 협정은 양 당사국이 각자의 법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최종 서면통보의 접수 30일 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됨.

〈한-콜 FTA 협상일지〉

일 시	주 요 내 용
2008.7.14.	양국 외교장관회담 시 콜롬비아측이 양국간 FTA 체결 검토 요청
2008.11.22.	APEC 정상회담 계기 한-콜롬비아 정상회담에서 한-콜롬비아 FTA 사전 공동연구 추진 합의
2009.3.	한-콜롬비아 FTA 민간공동연구 개시
2009.8.31.	공동연구 종료
2009.12.7.~9	제1차 한-콜롬비아 FTA 협상 개최 (서울)
2010.3.1.~5	제2차 한-콜롬비아 FTA 협상 개최 (보고타)
2010.5.3.~5	제1차 한-콜롬비아 FTA 회기간 회의(상품분야) 개최 (미국 LA)
2010.6.14.~18	제3차 한-콜롬비아 FTA 협상 개최 (서울)
2010.9.6.~10	제2차 한-콜롬비아 FTA 회기간 회의(상품분야) 개최 (미국 워싱턴 DC)
2010.9.20.	제3차 한-콜롬비아 공동위 개최 (보고타)
2010.10.4.~8	제4차 한-콜롬비아 FTA 협상 개최 (칼리)
2011.2.7.~9	제3차 한-콜롬비아 FTA 회기간 회의 개최 (미국 LA)
2011.10.10.~14	제5차 한-콜롬비아 FTA 협상 개최 (서울)
2012.4.23.~27	제6차 한-콜롬비아 FTA 협상 개최 (콜롬비아 카르타헤나)
2012.6.11.~13	제7차 한-콜롬비아 FTA 협상 개최(서울)
2012.6.25.	한-콜롬비아 FTA 타결(보고타)
2012.8.31.	한-콜롬비아 FTA 가서명(서울)
2013.2.21.	한-콜롬비아 FTA 서명식 개최(서울)
2014.4.29.	한국 국회 비준 완료
2014.12.16	콜롬비아 국회 비준 완료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II. 한-콜롬비아 FTA 협정 주요 내용

□ (상품) 현재 교역 중인 사실상 모든 품목에 대해 10년 내 관세 철폐

* 수입액 기준 : (한) 99.9%, (콜) 97.8%, 품목 수 기준 : (한) 96.1%, (콜) 96.7%

- (공산품) 양측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대부분 공산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 (품목 수 기준 : 한 99.8%, 콜 99.8%)
 - 한국의 주력 수출 공산품에 대해 콜롬비아의 기존 FTA 체결국가(미국, EU) 수준의 양허를 확보함으로써 콜롬비아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유지함.

〈우리 주요 수출품에 대한 콜롬비아 측 양허 내용〉

- 즉시 철폐 : 무선전화기, VCR, 합성수지(폴리에틸렌 등) 등
- 5년 철폐 : 자동차부품, 버스 및 승용차용 타이머, 의류, 섬유류 등
- 9년 철폐 : 중형 디젤 승용차(SUV) 등
- 10년 철폐 : 승용차, 화물자동차 등
- 12년 철폐 : 냉장고, 세탁기 등

- (농산물) 한국은 커피, 화초류 등 현재 교역 중인 농산물을 개방했으나, 쌀, 쇠고기, 양념 채소류 등 민감 농산물에 대해서는 양허 제외 · 농산물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조치) · 관세율할당 · 계절관세 · 장기 관세 철폐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함.

* 쌀(협정에서 배제) · 쇠고기 · 분유 · 고추 · 마늘 · 양파 등 151개 품목 양허 제외, 여타 583개 주요품목 (품목 비중 36.9%)은 10년 이상 장기로 관세 철폐

〈한-콜 FTA 전체 품목 양허 수준〉

양 허 단 계	우 리 양 허		콜 측 양 허	
	품 목 수	비 중	품 목 수	비 중
즉시철폐	9,787	82.38%	4,390	60.64%
무관세	1,932	16.26%	265	3.66%
3	268	2.26%	33	0.46%
5	670	5.64%	1,546	21.35%
5년 소계	10,725	90.27%	5,969	82.46%
7	136	1.14%	503	6.95%
9			1	0.01%
10	558	4.70%	529	7.32%
10년 소계	11,419	96.11%	7,003	96.73%
10년 초과	304	2.56%	184	2.54%
TRQ	5	0.04%	6	0.08%
양허제외	153	1.29%	47	0.65%
계	11,881	100.00%	7,240	100.00%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한-콜 FTA 공산품 양허 수준〉

양 허 단 계	우 리 양 허		콜 측 양 허	
	품 목 수	비 중	품 목 수	비 중
즉시철폐	9,500	95.66%	3,849	62.79%
3	146	1.47%	31	0.51%
5	132	1.33%	1,420	23.16%
5년 소계	9,778	98.46%	5,300	86.46%
7	6	0.06%	455	7.42%
9			1	0.02%
10	127	1.28%	363	5.92%
10년 소계	9,911	99.80%	6,119	99.82%
12	20	0.20%	11	0.18%
총합계	9,931	100.00%	6,130	100.00%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 (서비스) 국경 간 서비스 공급에 대해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를 부여, 시장접근 제한조치 및 현지주재 의무 부과 금지

- 콜롬비아의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은 미-콜롬비아 FTA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국, EU FTA와 비슷한 수준으로 콜롬비아에 시장을 개방할 예정임.

□ (투자) 투자 자유화와 함께 상대국 투자자 보호로 기업의 현지 진출 환경 개선

- 투자관련 이행요건 부과 금지, 경영진 국적요건 제한 금지 등을 규정하여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환경 개선
-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고 채권자 보호, 범죄행위 등의 송금제한 이유를 한정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

□ (정부조달)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콜롬비아와 정부조달 시장 상호 개방에 합의, 정부조달 시장접근 기회 확대

- 상품의 경우 일부 품목을 제외한 상품 전반 개방에 합의하였으며 서비스 역시 미국, 캐나다 대비 개방 폭이 넓음.

〈우리나라의 FTA별 정부조달 양허 현황〉

(단위 : SDR)

구 분		한-콜 FTA	한-페루 FTA	한-미 FTA	현행 GPA상 우리 양허	개정 GPA상 우리 양허
중앙 정부 기관	상품	7만	9만5천	(미)10만불 (한)1억원	13만	13만
	서비스					
	건설 서비스	500만	500만		500만	500만
지방 정부 기관	상품	20만	20만	미양허	20만	20만
	서비스					
	건설 서비스	1,500만	1,500만		1,500만	1,500만
기타 기관 (공기업)	상품	40만	40만		45만	40만
	서비스	(양국 모두) 개정 GPA 발효시 개방 40만	(페) 40만 (한) 개정 GPA 발효시 개방 40만		미양허	40만
	건설 서비스	1,500만	1,500만		1,500만	1,500만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Ⅲ. 한-콜롬비아 교역 및 투자 현황

□ 한-콜롬비아 교역 현황

- '13년 우리나라의 전체 중남미 교역에서 콜롬비아는 수출과 수입 각각 6위와 11위를 기록하였으며 '14.11월 기준 수출입 순위는 6위와 5위를 기록
- 교역 증감률 면에서 콜롬비아는 중남미 주요 교역국 중 가장 가파른 교역 둔화세를 보였으나 11월 기준 對콜롬비아 수출은 17.4%, 수입은 164.4% 증가

〈한-콜롬비아 연도별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는 증감률,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11월)
총액	1,233	921	1,820	1,993	1,881	1,548	1,901
對콜수출	1,090 (-2.7)	797 (-26.9)	1,388 (74.2)	1,613 (16.2)	1,467 (-9.1)	1,342 (-8.5)	1,391 (17.4)
對콜수입	143 (23.3)	124 (-12.9)	432 (245.9)	380 (-12.1)	414 (9.1)	206 (-50.2)	510 (164.4)
무역수지	947	672	956	1,233	1,052	1,135	880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한-콜롬비아 주요 수출입 품목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對콜롬비아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액의 50%를 차지해 절반 수준에 달하며 그 뒤로 합성수지, 타이어, 무기류 등이 주요 수출 품목임.
- 수입의 경우, 1차 상품 중심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들어 원유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합금철, 커피, 동괴 등 주요 품목 대부분이 두자리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한-콜롬비아 품목별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전년 동기대비 %)

순위	수출 ('14.11)			수입('14.11)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승용차	350	5.8	원유	282	135,714,975.5
2	자동차부품	142	20.3	합금철	87	76.7
3	합성수지	130	24.3	커피류	74	42.5
4	타이어	79	21.9	동괴및스크랩	16	49.9
5	무기류	67	4,560.7	알루미늄괴 및스크랩	11	-2.8
6	기타석유 화학제품	51	-1.9	고철	10	34.1
7	화물자동차	35	-14.5	농약	7	-34.2
8	선박	32	0.0	화초류	4	8.7
9	무선전화기	29	-1.4	기타가죽	3	94.4
10	섬유기계	26	-20.2	당류	2	-49.3
	총계	941	4,595	총계	496	135,715,195.5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한-콜롬비아 투자 현황

- '10.8월 새로 출범한 Santos 정권의 치안 안정정책과 내국민대우, 세제혜택,

과실송금 자유화, 간소화 된 투자절차 등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노력으로 콜롬비아는 중남미 유망 투자 진출국 중 하나로 등극함.

- 콜롬비아 정부는 한국정부 및 기업의 자국시장 진출을 환영하고 있으며 양국 정부는 물론 기업 간의 교류 확대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對콜롬비아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나, 콜롬비아 공공기관의 비효율적 행정관행, 중앙 정부 및 지방정부의 복잡한 세금체계, 국가 인프라 부족 등은 투자진출의 방해 요소로 작용
- '91년 콜롬비아 정부의 외국인 투자 전면 개방 이후 국내 기업들의 콜롬비아 진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또한 진출하고 있음.

* '13.6월 기준, 콜롬비아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인터내셔널, 현대중합상사, 한국타이어 등 총 36개사가 진출해 있음.

〈對 콜롬비아 연도별 투자 현황〉

(단위: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05	2	492	2	488
2006	1	4,859	1	4,859
2007	3	21,925	3	21,925
2009	6	20,206	17	12,582
2010	4	38,576	29	26,399
2011	11	117,593	52	53,064
2012	16	168,901	66	91,605
2013	11	10,608	27	61,553
합계	54	513,162	197	272,474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Ⅳ. 한-콜롬비아 FTA 주요 수혜분야 전망

□ 상품분야

○ 주력 수출 품목

- 양국 주요 교역 품목 구성이 소수 품목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으로 단기간에 획기적인 교역 구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 그러나 FTA 발효 이후 주요 품목별 관세 인하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임.
- 한국산의 콜롬비아 시장 점유율이 3위(현대), 4위(기아)를 기록하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도 FTA 발효 후 가격경쟁력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수출확대가 기대
- 대부분의 자동차가 10년 간 단계적 관세철폐 대상 품목으로 분류됨에 따라 가격인하를 통한 즉각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 보다는 점진적 진출 확대가 예상됨.
- 합성수지, 타이어, 자동차 부품 등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5년 간 단계적 관세 철폐 대상 품목임에 따라 점진적으로 점유율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임.

〈기존 주력 수출 품목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No.	품목명	2012		유망사유
		금액	증가율	
1	승용차	469	1.6	- 콜롬비아 자동차 수요 증가세 유지 - 현지 인지도 및 가격경쟁력 개선
2	자동차부품	221	-40	- 자동차 수요 증가와 동반 증가 - 가격경쟁력 강화 및 A/S 마켓 본격 형성
3	합성수지	96	-7.7	- 품질 신뢰도 기반 가격경쟁력 강화 - 에틸렌, 폴리에틸렌 제품 관세 즉시 철폐
4	화물자동차	52	-19.3	- 대외교역 증가 및 국내 유통산업 성장 - 품질 인지도 및 가격경쟁력 강화
5	타이어	44	1.1	- 자동차 수요 증가와 동반 증가 - 경쟁국 제품 대비 가격경쟁력 확보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중장기 유망 품목

- 한-콜 FTA 발효 이후 중장기적으로 진출 확대가 예상되는 품목은 건설 중장비 및 건설자재 등이며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FTA 수혜품목이 될 전망
- 건설 분야의 경우 콜롬비아 정부가 주도적으로 투자 확대를 추진하는 분야로 도로, 공항, 항만 등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증가와 외국자본 투자진출 확대에 따른 일반건설 분야 호황이 시장 확대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임.
- 실제로 건설중장비 및 강관제품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이 관세 즉시 철폐 대상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FTA 발효 시 즉각적인 수혜 품목이 될 것으로 예상
- 한-콜 FTA 협정문에 따르면 건설 중장비에 해당하는 8429-8431류 품목 대부분이 FTA 발효 즉시 관세 철폐대상
- 철강제품(7208~7210류)을 중심으로 한 건설자재 역시 즉시철폐대상 품목 비중이

높아 주요 수혜품목이 될 것으로 기대

- 그 밖에 의약품(3004류) 및 의료기기 역시 현지 정부의 보건 시스템 개혁 및 의료시설 현대화 관련 투자 확대에 따라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가 가능한 분야로 손꼽힘

〈중장기 유망품목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No.	품목명	2012		유망사유
		금액	증가율	
1	건설중장비	41	41.3	- 콜 건설시장 호황으로 장비수요증가 - 선진국 제품 대비 가격경쟁력 확보
2	섬유기계	34	40	- 미국, EU FTA로 의류수출 증가 - 생산설비 확대 및 현대화 추진 중
3	전선	21	117.1	- 국가 전력망 현대화 사업 추진 - 한국산 전선 수입 관세 최대 7년 내 철폐
4	열연강판	15	70.9	
5	아연도강판	15	40.9	- 건설시장 호황에 따른 수요 증가 - 한국기업 PJ 수주 확대에 따른 수출 증가
6	철강 및 비합금강형강	15	29.2	
7	의약품	12	12.6	- 선진국 제품 대비 가격경쟁력 확보 - 보건체계 개혁에 따른 기회시장 확대
8	에어컨	5	49.9	- 사무용 빌딩 건설 수요 증가 - 시스템 에어컨 위주 수출 확대 가능
9	의료용 전자기기	4	2.1	- 병원 PJ 증가로 첨단 의료기기 수요 확대 - 한국산 제품 수입관세 최대 7년 내 철폐
10	기계류	9	177.5	- 현지 제조업 수출 증가에 따른 투자 증가 - 한국산 기계류 가격 경쟁력 강화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서비스/투자분야

- (자원산업)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보고
 - 콜롬비아는 원유, 천연가스를 비롯하여 광물 자원을 다양 보유하고 있으며 중남미 대표 자원 부국으로 석탄, 금, 페로니켈, 백금 등이 주요 생산 광물
 - * 석탄(세계12위), 금(세계8위), 페로니켈(세계2위), 백금(세계3위) 등
- (물류/소비시장) 인구 4천만의 내수시장 및 물류 거점 활용 가능
 - 대도시를 중심으로 신흥 중산층 형성 (중상류층 구매력 2~3만 달러)
 - 미주대륙 정중앙에 위치, 대서양과 태평양 항구를 보유한 남미 국가
 - * 자동차, 석유화학 등 중남미 최고 제조업 기반, 태평양과 대서양 항구를 통한 아시아, 미국, 유럽 공략 용이
- (개발프로젝트) 대규모 국가 인프라 및 기반산업 투자 본격화
 - 2,500억불 규모 역대 최대 개발 프로젝트로 인프라 및 기반 산업 현대화 추진
 - 도로, 항만 등 인프라 분야 / 광업, IT, 바이오산업 등 산업 개발에 투자 집중
- (의료산업) 디지털 병원을 비롯한 의료시설 현대화 추진 중

- 보고타를 중심으로 공공 의료시설에 대한 현대화 프로젝트 발주 추진
- 디지털 병원 건설 프로젝트 및 첨단 의료장비 수입 수요 증가 전망
- (IT/교육) 교육용 통신망 구축 및 IT 콘텐츠 개발 분야
 - 정보통신부 신설 및 국가 IT 통신망 구축 프로젝트 추진 강화
 - IT를 통한 정보공유 및 교육 기회 확대 정책에 따라 투자수요 증가
- (방산) 무기 현대화 및 군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확대
 - 신형 무기 및 신규 장비 구입 프로젝트 증가에 따른 진출기회 확대
 - 해군기지 이전을 비롯한 군 인프라 신규 건설 프로젝트 시장 성장세

V. 우리기업의 FTA 활용 전략 및 시사점

□ 주요 분야별 전략

- 콜롬비아 내수시장 진출 강화
 - 내수 소비 증가에 따른 소비재 마케팅 확대 및 중상류층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제품군 집중 지원
 - FTA 체결로 변하는 시장 환경 모니터링 강화 및 타겟 품목별 진출 전략 차별화 추진
- 콜롬비아 국내 수요 맞춤형 마케팅
 - 경제 및 산업개발에서 정부의 역할이 큰 시장 특성에 따라 정부 정책 및 트렌드에 맞춘 진출 품목 선정
 - 특히 각종 건설플랜트 사업, 인프라 개발 사업은 우리기업의 중장기 콜롬비아 시장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 있음.
 - 또한 의료, 교육 등의 분야 역시 선진국 벤치마킹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콜롬비아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성장기반 강화 프로젝트의 일환임에 따라 양국 협력 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임.
- 대중소 공동 프로젝트 시장 진출
 - 자원개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발주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
 -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대기업 수주가 일반적이나 프로젝트 시행 과정에서 중소기업과의 협력이 요구됨.
 - 이에 따라 대중소 공동 컨소시엄 구성 또는 대기업 수주 후 협력업체 형태의 동반 진출이 가능할 것임.
 - 또한 이를 통해 콜롬비아 현지 시장 기반을 확보하여 추가수주 또는 신규 사업 발굴 등이 가능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시사점

○ 한-콜롬비아 FTA의 의의

- 아시아 국가 최초로 콜롬비아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중남미 주요 3개국(콜롬비아, 칠레, 페루)에 주요 시장을 확보함.
- 한-콜롬비아 FTA는 우리나라가 중남미 국가와 세 번째로 체결한 FTA이며 소비시장, 자원, 자체 산업기반, 건설플랜트 프로젝트 등 모든 면에서 가장 큰 시장과의 FTA임.
- 과거 칠레, 페루와의 FTA가 소비시장 보다는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을 타겟으로 했다면 콜롬비아와의 FTA는 국가 산업 전반에 걸쳐 효과 창출이 가능한 FTA임.

○ 중남미 필수 협력 국가

- 콜롬비아는 중남미 3위 수준이자, 광물, 석유, 천연가스 개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시장으로 FTA를 활용한 다양한 양국 협력모델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최근 본격적인 국가 개발이 시작되는 시점에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됨에 따라 한국의 국가 홍보, 브랜드 인지도 개선 및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I. FTA · 통상정책

□ (지역협정) 일본-터키 제1차 EPA협상 종료

- 일본-터키, 수출규제 완화 요구를 중심으로 한 제1차 EPA 협상 종료(12.1-2)
 - (배경) 일본의 對터키수출액 중 60%가 관세부과를 받고 있어 '12년에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가 터키와의 EPA 협상 조기개시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함. 이에 따라 '14.1월 양국 정상간 EP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
 - (일본) 터키에서 한국과 경쟁하는 분야인 일반기계 및 자동차 · 자동차 부품 분야의 관세가 비교적 높은 편으로 동 협상을 통해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함.
 - (터키) 동 협상을 통해 일본 측에 농림수산물 및 섬유제품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할 예정

(출처 : World Trade Atlas, JETRO, 외무성, 니혼게이자이 · 아사히 신문 ; 도쿄 · 오사카 무역관 종합)

□ (지역협정) 말레이시아, 제2차 동방정책 관련 협력 모색

- 말레이시아 정부, 한-말레이시아 양국 정상회의에서 제2차 동방정책 관련 협력 모색(12.10)
 - (동방정책) 'Look East Policy(LEP)' 라는 명칭의 동 정책은 아시아 내 선진국의 인적자원 · 기술유치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경제성장모델을 벤치마킹하고자 시행됨. 제1차 LEP는 '82- '12년까지 총 30년간 진행되었으며 한국 · 일본의 모델을 벤치마킹함.
 - (개요) 말레이시아 나집 총리는 양국 정상회의에서 제2차 동방정책 추진을 위해 한국과 양국 공동경제협력위원회 설치 및 교역 · 투자 ·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함.
 - (배경) 현재 중진국 함정*에 빠져있는 말레이시아는 경제성장을 위해 제2차 LEP의 중점 협력분야인 하이테크 투자유치 및 기술이전에 적합한 파트너가 한국이라고 판단함.
- * 중진국 함정 :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 초기에는 순조롭게 성장하다 중진국 수준에 와서는 어느 순간에 성장이 장기간 정체하는 현상을 뜻한다. 1인당 소득 기준으로 중진국은 4천-1만 달러 범위에 속한 국가들을 통칭함.
- (내용) 말레이시아는 한국 측에 자동차, LNG터미널, 의료기기, 생명공학 등 13개 분야를 시범 협력 사업으로 제안함. 또한 신재생에너지 및 하수처리 환경분야를 포괄하는 녹색산업 관련 한국 기술을 도입하는데 적극적 의지를 표출함.

□ (지역협정) 일-EU EPA 제8차 협상회의 종료

- 일-EU 경제연계협정(EPA) 제8차 협상회의 종료 (12.8-12)
 - (개요) 일본은 자동차 및 가전제품 관세 즉시철폐, EU는 주류 및 자동차 관련 규제완화를 중점적으로 요구한 EPA 제8차 실무협상 종료
 - (일본측) 현행 각각 10%·14%인 자동차와 TV의 공산품 관세 즉시철폐를 요구했으나 합의도달 실패
 - (EU측) EU는 주류 및 자동차 부문의 비관세장벽 완화 및 기재 조달시장의 개방을 요구
 - EU는 자동차 부품의 규격 및 오토바이의 소음 규제 등의 완화를 요구함. 일본은 자동차 규제관련 EU와 부분적 공통화를 진행하나 안전성 규제는 제외할 예정
 - EU산 맥주의 발포주 분류에 따른 고관세부과 문제해결 및 와인의 첨가물인 메타주석산에 대한 일본 식품위생법 기준 완화 요구
 - EU는 일본 측에 철도·전력·가스 사업 등의 기재 조달시장 개방 요구
 - (향후 일정) ‘15.2월 브뤼셀에서 차기 EPA 협상 개최 예정 및 ‘15년 내 대체적 합의를 목표로 함.

(출처 : 시사통신, 산케이신문, 아사히신문 ; 도쿄 무역관 종합)

□ (지역협정) 미국, 쿠바와 국교 정상화 발표

- 미국 오바마 대통령, 쿠바와 외교관계 정상화 발표(12.17)
 - (개요) 미국은 ‘60년부터 단절된 쿠바와의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며 이에 따라 각종 주요정책들을 수정할 예정. 단, 쿠바에 대한 엠바고(경제봉쇄)는 의회의 권한임에 따라 동 정상화에는 미포함
 - (외교정상화) 쿠바 수도인 아바나에 미국 대사관 설립
 - (쿠바방문허용) 다음과 같은 12가지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미국인의 쿠바 방문을 허용
 - * 1. 가족방문 2. 미국정부, 타국정부, 국제기관 등의 공식 업무 3. 언론활동 4. 전문 연구 및 회의
 - 5. 교육활동 6. 종교활동 7. 공개 공연, 클리닉, 워크숍, 스포츠 및 기타 대회, 전시회 8. 쿠바인 지원
 - 9. 인도주의적 활동 10. 민간재단, 연구 및 교육기관 활동 11. 수출입 및 정보교류 활동 12. 기존 규정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승인된 수출 거래
 - (분기별 송금액) 분기별 송금이 허용되는 금액을 기존 분기별 500 USD에서 분기별 2,000 USD로 증액
 - (소액 수입) 쿠바 방문을 승인받은 미국인은 400 USD 미만의 쿠바 상품 수입

가능. 단, 담배와 술은 합쳐서 100달러 미만 대상으로 허용

- (통신서비스) 쿠바 내 인터넷 및 통신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 통신업체의 인프라·설비 설치 허용

(출처 : 백악관, 뉴욕타임즈, CNN, 워싱턴포스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외교협회(CFR), BBC ; 워싱턴 무역관 종합)

□ (지역협정)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가서명

○ 한-뉴질랜드 FTA 가서명 완료(12.22)

- (내용) 11.15일 양국 정상간 FTA 타결 공식선언 이후 12.22일 양측 수석대표인 최경림 통상차관보와 데이비드 워커 호주 외교통상부 차관보 FTA 협정 가서명 완료
- 양국은 '15년 상반기 중에 FTA 협정문의 정식서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동 협정은 정식서명 이후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무역·산업정책) 베트남, 투자법·기업법·주택법 개정안 확정

○ 베트남 정부, 투자법·기업법·주택법 국회 통과 완료(11.26)

- (개요)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외국투자기업의 투자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목적의 3개 분야별 법 개정안으로 '15.7.1일부로 시행 예정

〈개정안 주요 내용〉

분야	내용	세부내용	비고
투자법	외국인 투자기업 정의 명확화	- '51%이상의 자본을 외국인 개인 또는 기관이 투자한 회사'를 외투기업으로 정의함	- 이전 투자법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개념정의를 불명확해 법령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음
	금지 및 조건부 투자 분야의 개정	- 이전 법에서 금지된 51개 분야를 6개로 축소 및 조건부 투자분야 업종을 272개로 규정	- 조건부 투자 분야로는 복권, 보안, 경매, 프랜차이즈, 부동산서비스, 통신서비스, 여행업 등이 있음.
기업법	법인 인감 사용 여부	- 법인 인감 사용 여부는 기업들이 선택해서 사용하도록 허용됨	- 인감 사용 시 해당 정보가 국가DB에 저장되어 타 기업들이 정보 조회 용도로 사용됨.
	업종 추가 절차 간소화	- 비용 절감을 위해 기업들이 업종 추가 시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함	
주택법	외국인 주택 소유 허용	- 주택 건설 외국기업 및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들의 주택 구매·임대·기증·인계 등이 모두 허용됨	- 단, 외국인의 주택 소유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0년으로 제한되며 한 동의 아파트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30% 이내로 제한

□ (무역 · 산업정책) 일본, 아르헨티나산 리튬 생산프로젝트 지원

- 일본 유관기관 · 도요타 통상, 기업들의 안정적인 리튬 조달을 위한 아르헨티나산 리튬* 생산프로젝트 지원 발표(12.3)

* 리튬 : 차재용 연료전지, 휴대용 전자기기의 축전지, 유리의 원료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 (배경) 일본 리튬 수입량의 90%를 공급하는 칠레에서 최근 리튬 주산지인 아타카마 소금호수의 수위 강하 문제가 발생하여 공급 불안정성 대비 필요성 대두
- (내용) 도요타 통상(Toyota Tsusho Corporation)이 프로젝트 비용의 25%를 출자하여 생산된 리튬의 전량 판매권을 취득함. 기타 금융 지원은 일본무역보험(NEXI) · 일본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가 담당
- (공급계획) 도요타 통상이 '15년부터 아르헨티나 올라로스 소금호수에서 일본 내수 시장 요구량의 50%인 5천 톤을 생산 및 공급할 예정

(출처 : 일본경제신문 ; 후쿠오카 무역관 종합)

□ (무역 · 산업정책) 러시아, '15년 연두교서 발표

- 러시아 푸틴 대통령, 크렘린 궁에서 '15년 연두교서 발표(12.4)
- (배경) 우크라이나 사태, 서방 제재,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을 반등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기존 연두교서 발표 시기보다 이른 일자에 내년도 연두교서를 발표함.
- (우크라이나 사태) 서방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조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반정부 사태는 서방에 책임이 있다고 언급함. 또한 크림반도는 러시아의 영토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동 지역의 재건 및 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
- (서방제재) 서방과의 관계는 유지할 것이며 극동 · 남미 · 아프리카 지역과의 협력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 표명. 다만, 미국의 '근본 원칙과 상식에 반대' 되는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는 일부 비판적 입장을 견지함.
- (경제정책) 신기술 개발 · 생산제품의 경쟁력 강화 · 제조업 및 금융산업의 펀더멘털 강화 · 노동 생산성 강화의 4대 과제를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활동 및 외국인 자본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철폐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
- (기타) 러시아 루블화의 변동성을 틈탄 환투기를 막기 위해 변동환율제를 조기 시행했다고 설명했으며 루블화의 안정을 위해 중앙은행과 정부의 공조를 통한 정책을 시행할 것을 언급

(출처 : 크렘린 보도자료 및 현지 언론 ; 모스크바 무역관 종합)

□ (무역 · 산업정책) 인도, 방위산업 오프셋 정책 완화 추진

-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방위산업 계약 시 적용되는 오프셋 규정* 완화 추진(12.5)
 - * 오프셋 규정 : 정부조달 중 방위산업 관련 계약 시 적용되는 규정으로 인도는 6천5백만 달러 이상의 계약에 대해 총 계약금액의 30%를 인도 부품공급업체에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배경) 30%에 달하는 오프셋으로 인해 소규모 전자 부품 제조업체들이 방위상품 공급계약을 하지 못해 인도 내 전자기기 제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음.
- (내용)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현행 오프셋 비율인 30%을 10-15%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을 추진하여 해외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출처 : Business Line ; 뉴델리 무역관 종합)

□ (무역 · 산업정책) 일본, 우크라이나 내 친러시아파 자산동결

- 일본 내각회의, 우크라이나 내 친러시아파에 대한 자산동결 및 입국비자 발급 금지조치 승인(12.9)
 - (배경)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9.5일 정전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분리파무장 세력은 거점지역을 확대하고 11.2일에 우크라이나 법을 준수하지 않는 독자적인 선거를 강행함.
 - (목적) 동 조치는 EU가 11.29일자로 친러시아파의 EU 내 자산을 동결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여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정세 평화적 · 외교적 해결에 동참하고자 함.
 - (내용) 우크라이나 동부의 불안정화를 유발시켰다고 판단되는 선거관계자 중심으로 28명 및 14개 단체에 대한 일본 내 자산을 동결
 - * 14개 단체 : 도네츠크인민공화국, 루간스크인민공화국, 노보로시아연방, 대동군, 소볼, 루간스크친위대, 남동 부군, 돈바스인민군, 보스톡대대, 도네츠크공화국, 루간스크지역의 평화, 자유돈바스, 인민연합, 루간스크경제연합
 -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 등의 관계자들인 26명 개인에 대해서는 일본 입국비자 발급금지조치 시행

(출처 : 수상관저 기자회견, 동경신문, 산케이신문 ; 도쿄 무역관 종합)

□ (무역 · 산업정책) 인도, 의료기기 분야 FDI 논의

- 인도 산업정책 진흥위원회(DIPP), 의료기기 분야 FDI 100% 허용 방안 논의 촉구(12.10)
 - * DIPP : The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
- (배경) 인도 의료기술 시장이 '13년 63억 USD를 기점으로 매년 10-12%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여 '25에 500억 USD 규모의 거대 시장형성이 기대됨.

- (내용) DIPPP는 의료기기 제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부처에 의료기기 분야 FDI 100% 허용관련 논의진행을 촉구함.

(출처 : Times Business ; 뉴델리 무역관 종합)

□ (무역 · 산업정책) 브라질, 사회보장세 및 공업세 인상 고려 중

○ 브라질 정부,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으로 사회보장세 및 공업세 인상 고려

- (배경) '14년 브라질 기초 재정수지 흑자비중이 GDP의 1.3%를 차지하여 기존 목표치에 0.6% 못 미쳐 재정 건전성 확보의 필요성 증대
- (개요) 브라질 정부는 수입제품에 부과되는 사회보장세(PIS/Cofins) 인상 및 공업세(IPI)* 인상을 적용대상 확대를 통해 50억 헤알 정도의 세수 증가액을 확보하고자 함.

* IPI : Imposto de sobre Produtos Industrializado(공업세)

- (사회보장세 인상) 현재 수입제품 부과 사회보장세는 PIS세, Cofins세 각각 1.65%, 7.65%로 국산제품 부과 세율보다 낮음. '15년부터 인상하여 적용, 실시할 예정
- (IPI 대상 확대) 화장품 대상 IPI는 현재 화장품 제조업체에만 부과되고 있으나 화장품 유통업체에도 부과할 예정. 화장품 제조업체에 부과중인 IPI 또한 인상 예정
- (연료세 부활) '08년 도입 후 '12년 폐지된 연료세인 Cide를 부활시킬 예정이며 도입 당시 가솔린 1ℓ 당 0.28 헤알, 디젤 1ℓ 당 0.07 헤알 부과함.
- (저소득층 상여금) 저소득층 대상 지원 연말 상여금인 Abono Salarial의 지급 대상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현행법상 저소득층* 중 연간 1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 모두에게 상여금 100%가 지급됨. '15년부터는 근무기간에 비례해 상여금 비율을 조정하여 지급할 예정

* 현행법상 저소득층은 월급이 최저임금('14년 12월 기준 724 헤알)의 2배인 1448 헤알 미만인 근로자를 지칭함.

(출처 : 일간지 Folha de São Paulo ; 상파울루 무역관 종합)

II. 통관 · 수입규제

□ (통관절차) 중국, 독일산 섹금류 상품 검사검역 실시

-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독일산 섹금류 및 관련 상품에 대한 검역 실시 시행안 발표(11.27)
 - (배경) '14.10.10일 독일 식품농업 및 소비자 보호부가 Ordrrhein-Westfalen 지역의 한 농장에서 H5N2형 조류독감발생을 확인 후 WHO(세계동물보건기구)에 긴급보고서를 제출함.
 - (개요) 관련 조류 독감 바이러스의 중국 진입을 차단하고 중국의 목축업 안전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동물식품 검사검역법」에 의거한 시행안을 발표
 - 독일 Ordrrhein-Westfalen 지역에서 직·간접적 경로를 통한 섹금류 및 관련 상품 수입 금지 및 즉시 반송·폐기처리
 - 독일의 섹금류 및 관련 상품을 우편으로 부치거나 관광객의 휴대 금지, 적발 시 즉시 반송·폐기처리
 - 중국을 통과하는 운송수단에서 독일 섹금류 및 관련 상품 발견 시 일차적으로 봉인 후 보관. 이후 중국 수출입국 감독관의 살균작업 실시

(출처 : 경제산업성 ; 오사카 무역관 종합)

□ (수입규제) 카자흐스탄, 러시아산 주류 수입금지 해제

- 카자흐스탄 국가경제부, 러시아산 보드카 및 맥주 등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해제 발표(11.24)
 - (배경) '14.6월 카자흐스탄어로 된 성분표시 및 경고문 미부착으로 인해 러시아·이탈리아·프랑스산 등의 주류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림.
 - (내용) 러시아산 보드카 및 맥주 등에 대해 내려진 수입금지 조치를 '15.1.1일부로 해제하고 동 수입금지 조치 판정을 받은 타 국가의 주류에 대해서는 금지조치 시행 지속

(출처 : Tengrinews ; 알마티 무역관 종합)

□ (수입규제) 미얀마, 자동차 수입조건 변경안 발표

- 미얀마 상무부, '15.1.1일부로 적용되는 자동차 수입조건 변경안 발표(12.15)
 - (개요) 동 변경안은 기존안에 비해 수입대상 차종의 연식을 축소할 것을 특징으로 함.

〈자동차 수입기준 변경 상세내역〉

조건	차종	수입가능 모델 연식
- 폐차·중고차 반납에 따른 수입허가 신청	승용차	2003~2009년 기간 중 생산된 자동차
	승용차(1350cc 이하)	2003~2015년 기간 중 생산된 자동차
	화물차	2003~2009년 기간 중 생산된 자동차
	고속버스	2003~2009년 기간 중 생산된 자동차
- 선원, 공무원, 국방부 근무 공무원, 민간 업체, 호텔/여행사업자, 해외근무 노동자, 외화계좌를 보유한 일반국민 등의 자동차 수입허가 신청	승용차	2010~2015년 기간 중 생산된 자동차
	승용차(1350cc 이하)	2010~2015년 기간 중 생산된 자동차
	화물차	2005~2015년 기간 중 생산된 자동차
	버스	2010~2015년 기간 중 생산된 자동차
	미니버스, 시내버스(좌측핸들 기준)	2005~2015년 기간 중 생산된 자동차
- 관련부처의 추천으로 택시 수입허가 신청	승용차	2010~2015년 기간 중 생산된 자동차
- 일반 라이선스를 통해 자동차 수입허가 신청하거나 FOC제도를 통해 기증용 자동차 허가 신청	승용차	2010~2015년 기간 중 생산된 자동차
	산업용 기계	2005~2015년 기간 중 생산된 자동차
	소방차	1999~2015년 기간 중 생산된 자동차
	응급차	1999~2015년 기간 중 생산된 자동차
	장의차	1999~2015년 기간 중 생산된 자동차
	종교 목적 차량	2005~2015년 기간 중 생산된 자동차
	고속버스	2010~2015년 기간 중 생산된 자동차
	미니버스, 시내버스(우측핸들 기준)	2005~2015년 기간 중 생산된 자동차
	승용차	2005~2015년도 기간 중 생산된 자동차
- 정부 부처에서 자동차 수입허가 신청	상용차, 승객용차, 화물차, 산업용 기계	2005~2015년 기간 중 생산된 자동차

(출처 : 미안마 상무부, 통계청, ITC ; 양곤 무역관 종합)

□ (수입규제) 이탈리아, 과일탄산음료의 과일즙 농도 상향조정법 발효 예정

- 이탈리아 정부, 과일탄산음료의 과일즙 농도 의무를 20%로 상향조정법 발효 예정
 - (배경) 10.21일부로 이탈리아 하원은 이탈리아 내 생산·판매되는 과일탄산음료의 과일즙 농도를 현행 12%에서 20%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대상) 오렌지탄산수, 레몬탄산수 등 과일즙을 함유하는 모든 과일탄산음료
 - (내용) 과일탄산음료의 과일즙 농도를 상향시켜 이탈리아 현지 과일재배 농가의 수익증대를 위한 법으로 EU 평균 과일즙 함유량인 5%의 4배에 달하는 기준을 신규 제정함. 동 법안은 시행령 제정에 맞춰 1년 내 발효 예정. 단, 동 법안은

이탈리아 내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의무규정으로 수입제품은 규제 미적용 대상임.

- (반응) 이탈리아 음료생산협회(Assobibe)는 20%의 과일즙 농도함량을 위해서는 원가상승이 불가피함에 따라 스페인·북아프리카산 제품에 밀려 시장경쟁력이 약화된다고 주장

(출처 : Il Sole 24 Ore, Euromonitor ; 밀라노 무역관 종합)

□ (수입규제) 미국, 화학물질 신규사용에 대한 수입규제 시행

- 미국 환경보건국(EPA), 노닐페놀* 등 15가지 화학물질의 신규사용*에 대한 수입 규제 시행법안 건의

* 노닐페놀 :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세제, 화장품, 세면용품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는 계면활성제의 부산물임.
미국 식약청에 간접식품 접촉물질로 등록되어 있으며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등 인체에 유해성을 끼침

* 신규사용 : 해당 화학물질이 중간 매개체 혹은 에폭시 치료 촉매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의미함

- (내용) 동 법안에 따르면 노닐페놀, 노닐페놀 에톡시에이트 등 15가지 화학물질을 신규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제조·수입·유통하기 전 EPA에 최소 90일 이전에 동 물질 사용사실을 고지해야함.
- (향후 일정) 동 신규법안에 대한 문제제기 기간을 '15.1.15일까지 가지며 문제 제기 기간 이후 동 법안에 따른 EPA의 규제가 이루어질 예정

(출처 : EPA, Sandler, Travis & Rosenberg ; 뉴욕 무역관 종합)

□ (세이프가드) 터키, 수입산 벽지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 터키 정부, 수입산 벽지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공고(12.16)
- 해당제품 HS코드: 4814.20-0000, 4814.90-1000

(출처 :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 베이징 무역관 종합)

□ (세이프가드) 이집트, 수입산 자동차 배터리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 이집트 정부, 국내 기업 신청으로 수입산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공고(12.18)
- 해당제품 HS코드: 8507.10-0090

(출처 :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 베이징 무역관 종합)

□ (반덤핑) 중국, 한국 등 4개국 클로로포름 반덤핑 조치 종료

- 중국 상무부, '14.11.30일부로 EU·한국·미국·인도산 클로로포름에 대한 반덤핑 조치 종료 공고(12.1)

- 해당 제품 : 클로로포름(Trichloromethane, Chloroform)
- 해당제품 HS코드: 2903.13-00
- ('14.11.29일) 반덤핑 조치 만료일자

(출처 :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 베이징 무역관 종합)

□ (반덤핑) 미국, 중국산 에어컨용 스톱밸브 덤핑 행정재심 최종판정

- 미국 상무부, 중국산 에어컨용 스톱밸브에 대한 덤핑 행정재심에서 무혐의 최종판정(12.3)
 - (내용) 피소업체인 Zhejiang DunanHetian Metal사는 조사 해당기간 동안 교역량이 적고 Zhejiang Sanhua사의 판매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지 않다고 판정하여 두 기업 모두 무혐의 최종판정
 - 해당제품 HS코드: 8481.80-1095, 8415.90-8085
 - ('13.6월) 반덤핑 행정재심 조사 개시

(출처 :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 베이징 무역관 종합)

□ (반덤핑) 일본, 중국산 TDI 반덤핑 산업피해 예비판정

- 일본 경제산업성·재무부, 중국산 TDI*에 대해 산업피해 인정 예비판정(12.4)
 - * TDI :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무색의 액체로 자동차 좌석, 침구 등에 사용되는 폴리우레탄 연질 폼의 원료로 사용
 - 제소업체 : 미쓰이 화학
 - 해당품목 HS코드 : 2929.10-1000
 - '14.2.14일 조사 개시 이후 중국산 TDI의 국내산업피해 혐의를 인정하는 등 예비판정 발표
 - (향후 일정) WTO 협정에 따른 국제규칙 및 국내법령에 따라 지속조사를 실시한 후 반덤핑관세 부과여부를 정할 예정

(출처 : 경제산업성 ; 오사카 무역관 종합)

□ (반덤핑) 브라질, 중국산 PET필름 임시 반덤핑 관세 부과

- 브라질 정부, 중국산 PET필름에 6개월간 임시 반덤핑 관세 부과 공고(12.5)
 - 해당제품 HS코드: 3920.62-11, 3920.63-00, 3920.68-99, 3920.69-00
 - 반덤핑 관세 : 820.60 USD / 톤
 - ('14.6월) 반덤핑 조사 개시

(출처 :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 베이징 무역관 종합)

□ (반덤핑) 우크라이나, 중국산 스테인리스 강관 반덤핑 관세 부과

- 우크라이나 정부, 12.29일부로 중국산 이음매 없는 스테인리스 강관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 공고(12.8)
 - 반덤핑 세율 : 41.07%
 - ('13.7월) 반덤핑 조사 개시

(출처 :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 베이징 무역관 종합)

□ (반덤핑) 브라질, 중국산 비단조 금속마그네슘 반덤핑 일몰재심 조사 개시

- 브라질 정부, 중국산 비단조 금속마그네슘에 대한 반덤핑 일몰재심 조사 개시 공고 (12.9)
 - 해당제품 HS코드 : 8104.11-00, 8104.19-00

(출처 :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 베이징 무역관 종합)

□ (반덤핑) 중국, 대만 등 2개국 1,4-부탄디올 반덤핑 조치 종료

- 중국 상무부, '14.12.25일부로 사우디아라비아 · 대만산 1,4-부탄디올에 대한 반덤핑 조치 종료 공고(12.10)
 - 해당 제품 : 1,4-부탄디올(1,4-Butanediol, BDO)
 - 해당제품 HS코드: 2905.39-90
 - ('14.12.24일) 반덤핑 조치 종료일자

(출처 :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 베이징 무역관 종합)

□ (반덤핑) 멕시코, 중국산 믹서기 덤핑 최종판정

- 멕시코 정부, 중국산 가정용 및 상업용 믹서기에 대해 덤핑 최종판정(12.11)
 - 반덤핑 관세 : (广东德豪润达电气공사) 12.88 USD / 대, (广东新宝电气공사) 18.64 USD / 대
 - 해당제품 HS코드: 8509.40-01

(출처 :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 베이징 무역관 종합)

□ (반덤핑) 인도, 중국산 노일실크 반덤핑 조사 개시

- 인도 정부, 중국산 노일실크 조사 개시 공고(12.12)

- 해당제품 HS코드: 8002.00-10
- ('13.4.1일- '14.6.30일) 반덤핑 조사 기간

(출처 :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 베이징 무역관 종합)

□ (반덤핑) EU,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 반덤핑 조사 개시

- EU, 역내기업 신청으로 중국산 알루미늄호일에 대해 반덤핑 조사 개시 공고 (12.12)
- 해당제품 HS코드: 7607.11-19

(출처 :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 베이징 무역관 종합)

□ (반덤핑) 중국, EU 등 2개국 혈액투석기 반덤핑 조사 종료

- 중국 상무부, EU·일본산 혈액투석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 종료 공고(12.17)
 - (내용) 제소업체의 신청으로 EU·일본산 혈액투석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 종료
 - 해당제품 HS코드: 9018.90-40
 - ('14.6월) 반덤핑 조사 개시

(출처 :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 베이징 무역관 종합)

□ (반덤핑) 멕시코, 중국산 와이어로프 덤핑 최종판정

- 멕시코 정부, 중국산 와이어로프에 대해 덤핑 최종판정(12.18)
 - 해당제품 HS코드 : 7312.10-01, 7312.10-05, 7312.10-07, 7312.10-99
 - 반덤핑 세율 : 2.58 USD / kg
 - ('13.8월) 반덤핑 조사 개시

(출처 :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 베이징 무역관 종합)

□ (반덤핑) 인도, 중국산 아질산나트륨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 연장

- 인도 재정부, 중국산 아질산나트륨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 연장 발표
 - (배경) Deepak Nitrite사의 중국산 아질산나트륨에 대한 반덤핑 제소 후 반덤핑 관세 부과 판정. 최근 10월 인도 재정부의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연장 검토 이후 연장조치 시행 결정
 - 반덤핑 관세 : 135.83 USD/톤
 - 해당품목 HS코드 : 2834.10-1000
 - (기존 부과기간) '14.2.26일- '15.2.25일

- (부과기간 연장) '14.2.26일- '16.8.16일

(출처 :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 다렌 무역관 종합)

□ (반덤핑 · 상계관세) 미국, 중국산 멜라민 반덤핑 · 보조금 조사 개시

- 미국 상무부, 국내 기업 신청으로 중국산 멜라민에 대한 반덤핑 · 보조금 조사 개시 공고(12.3)
- 해당제품 HS코드: 2933.61-0000

(출처 :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 베이징 무역관 종합)

□ (반덤핑 · 상계관세) 캐나다, 중국산 태양광패널 반덤핑 · 보조금 조사 개시

- 캐나다 정부, 국내기업 신청으로 중국산 태양광패널에 대한 반덤핑 · 보조금 조사 개시 공고(12.8)
- 해당제품 HS코드: 8541.40-0022

(출처 :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 베이징 무역관 종합)

□ (반덤핑 · 상계관세) 미국, 중국산 차아염소산칼슘 덤핑 · 보조금 최종판정

- 미국 정부, 중국산 차아염소산칼슘에 대해 덤핑 · 보조금 최종판정(12.10)
- 해당제품 HS코드 : 2828.10-0000, 3808.94-5000, 3808.99-9500

〈반덤핑 세율 및 상계관세율〉

구분	기업명	세율
반덤핑 세율	China Petrochemical International사	210.52%
	Tianjin Jinbin International Trade사	
	Wuhan Rui Sunny Chemical사	
	기타 기업	
상계관세율	Hubei Dinglong Chemical사	
	W&W Marketing사	
	Tianjin Jinbin International Trade사	
	기타 기업	

- ('14.1월) 반덤핑 · 보조금 조사 개시, ('14.5월) 덤핑 · 보조금 예비판정

(출처 :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 베이징 무역관 종합)

□ (반덤핑 · 상계관세) 캐나다, 한국 등 3개국 철근콘크리트 덤핑 · 보조금 최종

판정

- 캐나다 정부, 중국·한국·터키산 철근콘크리트에 대해 덤핑·보조금 최종판정 (12.11)
 - 해당제품 HS코드 : 7213.10-0000, 7214.20-0000

〈반덤핑 세율 및 상계관세율〉

국가	기업명	반덤핑 세율	상계관세(위안/톤)
중국	Shiheng Special Steel 그룹	17.1%	13
	기타 기업	41.0%	469
한국	현대 제철	13.3%	—
	현대 종합상사	41.0%	—
	GS 글로벌	41.0%	—
	기타 기업	41.0%	—
터키	HABAS SINAI VE TIBBI GAZLAR ISTIHSAL ENDUSTRISI A.S사	3.8%	—

- ('14.6월) 반덤핑·보조금 조사 개시, ('14.9월) 덤핑·보조금 예비판정

(출처 :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 베이징 무역관 종합)

Ⅲ. TBT

□ (기술규제) 미국, 임산부 의약품 구성성분에 대한 라벨링 최종규정 발표

- 미국 식약청(FDA), 임산부 등에 대한 의약품 처방전 내 구성성분 라벨 표시법 최종 규정 발표(12.3)
 - (개요) 미국 FDA 처방전 라벨규정 중 각각 임산부 및 분만과 출산 과정 라벨링 · 수유기 및 유모 라벨링 · 가임기 여성과 남성에 대한 라벨링 항목에 해당하는 8.1 · 8.2 · 8.3항 개정
 - (배경) 기존 라벨 표시법은 각 구성성분에 대해 A · B · C · D · X의 단순기호로 구성 되어 혼동을 줌. 이로 인해 잘못된 약물처방 및 부작용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
 - (대상) 처방전을 통해 받는 경구용 약과 연고 제품에 적용되며 일반 마트 약품코너에서 판매하는 비처방 의약품(OTC; Over-the-Counter)는 미적용
 - (내용) 동 규정은 임산부, 수유부 등에게 처방되는 약품 용기에 표시되는 것이 아닌 처방전에 기재되는 제약 성분에 대해 적용. 각 제약성분에 대한 라벨에 기존기호인 A · B · C · D · X가 아닌 임산부 · 수유부 · 가임기 여성과 남성의 세분화된 표시 적용.
 - 각 제약성분에 대한 라벨 표시들은 일반적인 약 성분에 대한 설명,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 임상 실험결과 및 고려 사항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명시해야함.
 - (향후 일정) 동 규정은 '15.6.30일부터 시행

(출처 : FDA 웹사이트 및 관련규정, Wall Street Journal ; 달라스 무역관 종합)

□ (기술규제) 미국, 어린이용 레이저 장난감 가이드라인 발표

- 미국 식품의약국(FDA), 어린이용 레이저 장난감 안전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 (12.19)
 - (배경) 특정 레벨 이상으로 출력되는 레이저가 안전하지 않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사용될 경우 사용자 및 주변인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음. 그러나 기존 미국 연방 관련법은 어린이용 레이저 장난감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음에 따라 신규 법안제정의 필요성 대두
 - (대상) 14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사용하기 위한 시각적 재미를 위해 생산, 디자인 또는 홍보되고 주로 장난감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단, 레이저프린터, 교육 · 과학자료 등 전문적/학술적 용도 또는 어린이도 사용 할 수 있는 레이저 제품은 예외)
 - FDA 관련 부서인 CDRH(Center for Devices and Radiological Health)가 특정 제품이 어린이용 레이저 장난감인지 판단

하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1. 판촉, 설명, 라벨링, 포장, 모양 : 어린이용 미디어를 통해 어린이가 제품을 가지고 놀이를 하고 있거나 제품에 어린이용 레이저 제품이라고 표기, 또는 포장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 등이 있어 어린이를 위한 제품이라는 의도가 보이는 경우
 2. 제품 판매처 : 어린이용 엔터테인먼트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에서 판매될 경우
 3. 제품의 목적 : 어린이용 제품인 것으로 보여지는 제품의 기능이나 성격이 존재할 경우
- (내용) 모든 어린이용 레이저 장난감은 방출되는 빛의 세기가 IEC Class1 한도를 준수하고 IEC Class1 레이블을 부착하는 것이 권장됨.
 - 레이저 장난감 전체가 레이저 제품으로 인증 받아야하나 레이저 방출 파트가 분리되는 제품의 경우 해당 부분만 별도로 인증 취득 가능
 - (기타) 동 가이드라인은 현재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이에 기초한 법률을 제정 중이므로 강제인증사항으로 적용될 예정임.

(출처 : 미국 FDA, Kohl's ; 뉴욕 무역관 종합)

□ (기술규제) 캐나다, 미용 목적 콘택트렌즈 규제 변경

- 캐나다 보건부, 미용 목적 콘택트렌즈의 의료 효과성 입증 면제조항을 삽입한 규제 변경안 시행 예정
 - (배경) '11년도에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를 의료기기로 분류하는 법안이 발의 되고 '12.12.14일에 캐나다 의회에서 채택됨. 단,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는 의료 및 치료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 규제법에 따라 치료 효과성을 입증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함.
 - (내용) 캐나다 보건부는 의료기기 규제법을 수정하여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가 기타 의료기기와 동일하게 안전성 입증 및 라벨링 규정은 준수하되 치료 효과성 입증은 면제하는 조항을 법안에 삽입함.
 - (향후 일정) 의회 채택일로부터 12개월 이후에 동 법안의 법적 효력 발생

(출처 : 토론토 무역관)

□ (기술규제) 인도네시아, 강제인증 품목 확대 및 라벨규정 강화 예정

- 인도네시아 무역부, 국가표준인증 강제취득 품목의 확대 및 라벨규정 강화 추진 예정
 - (목적)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인도네시아 내 유통품목들의 안전성 도모
 - (강제인증) 국가표준인증 강제취득 품목에 라면, 우유 파우더 등의 식료품 및 가스난로, 가정용 세라믹 등 60개를 추가할 예정. 단, 인도네시아 정부는 단기간에 인증취득이 어려운 자국 중소기업에 한해 인증 취득기한을 연장하는 방안 또한 검토 중임.

- (라벨규정) 국산품 및 수입품을 포함하여 자국 내 유통되는 모든 제품에 인도네시아어로 된 라벨 부착 의무화 추진 예정

(출처 : 자카르타 포스트 ;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 (기술규제) 캐나다, 수소불화탄소 규제 강화계획 발표

- 캐나다 환경부, 강화된 수소불화탄소(HFC) 규제 도입계획 발표
 - (배경) 프레온가스(CFC)의 사용금지 이후 수소염화불화탄소(HCFC) 및 수소염화탄소(HFC)를 사용해왔으나 HFC가 이산화탄소보다 100배 이상의 온실가스 효과를 발휘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
 - (대상) 기존의 HFC를 이용하는 시설 및 제품은 적용대상이 아니며, 강화된 규제 도입 이후의 신규 시설 및 제품에만 적용 예정
 - (내용) 동 규제 강화안은 '14.8.6일 발표된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HFC 관련 규제와 동일한 수준임.

〈규제강화안 상세내용〉

적용 대상	규제내용
에어로졸 분사제 (일부 기술용도 및 의료용도 제품 제외)	- HFC-134a, HFC-227ea, HFC-125 이용 제품 수입 및 제조 금지
거품제조기 (스프레이 제외)	- HFC-245fa, HFC-365mfc, HFC-134a, HFC-143a 이용 제품 수입 및 제조 금지
냉장, 냉동고	- HFC-134a, HFC-507, HFC-404a 이용 제품 수입 및 제조 금지
자동차 에어컨 냉매	- HFC-134a 이용 제품 수입 및 제조 금지

- (향후 일정) '15.1.16일까지 의견수렴기간을 가지며 미국 내 변동사항 발생 여부에 따라 상세내용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출처 : Canada Gazette Vol. 148 No. 49 ; 토론토 무역관 종합)

IV. 기타무역장벽

□ (서비스장벽) 미국, 신규 외국인직접투자 설문제출 의무화 재개

- 미국 경제분석국, 신규 FDI 설문 「BE-13」 제출 의무화 재개발표
 - (개요) 11.26일부로 신규 FDI 설문양식인 「BE-13」를 경제분석국의 e-File 시스템에 공개하고 설문제출을 의무화함.
 - (제출 해당사항) 1. 해외기업이 미국 내 주식회사의 의결권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회사가 아닐 경우 같은 수준의 실질적인 영향력 취득하는 등의 신규 FDI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2. 해외기업의 미국 내 계열사가 신규 법인 설립·사업 확장·3백만 USD 이상의 미국 기업을 인수할 경우
 - (내용) 미국 상무부는 11월부로 「BE-13」의 제출 대상자에게 통보를 개시했으며 통보를 받은 대상자들은 올해 1월 이후의 제출 해당사항에 대한 양식 제출 필수
 - 통보받지 못한 대상자들은 제출 해당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45일 내로 양식 제출 필수
 - 동 사항을 위반 시 2,500-32,500 USD의 벌금이 부과되며 의도적으로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10,000 USD의 벌금부과 및 1년 이하의 징역 선고

(출처 :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STR Trade Report ; 워싱턴 무역관 종합)

□ (지식재산권) 미국, 동축케이블 접속기에 337조사 시행키로 결정

- 미국 ITC, 동축케이블 접속기에 337조사* 시행키로 결정(12.8)
 - * 337 조사 :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통상법인 '관세법 제337조'에 저촉된 사례조사
 - (내용) PPC Broadband사는 미국에 수입·판매되는 동축케이블 접속기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미국 ITC에 판매 금지령을 내릴 것을 신청(11.5)
 - (조사대상) Corning Optical Communications RF사

(출처 :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 베이징 무역관 종합)

□ (지식재산권) 미국, 3D 극장시스템에 337조사 시행키로 결정

- 미국 ITC, 3D 극장시스템에 337조사 시행키로 결정(12.11)

- (내용) RealID사는 미국에 수입·판매되는 3D 극장시스템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미국 ITC에 판매 금지령을 내릴 것을 신청(11.7)
- (조사대상) Master Image 3D사

(출처 :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 베이징 무역관 종합)

12 통상 캘린더

2014/DECEMBER

한: 한국 미: 미국 WTO: WTO EU: EU
중: 중국 일: 일본 기타: 기타

일 Sunday	월 Monday	화 Tuesday	수 Wednesday	목 Thursday	금 Friday	토 Saturday
	1 EU EU 의회 위원회 총회 (12.1-4, 브뤼셀) 일 기타 일본-터키 제1차 EPA 협상(12.1-2, 도쿄) 기타 RCEP 제6차 협상 (12.1-5, 인도 그레 이터 노이다)	2	3	4 WTO ITA 협상(12.4-10, 제네바)	5	6
7 기타 TPP 협상(12.7-12, 워싱턴)	8 EU EU 의회 위원회 총회 (12.8, 브뤼셀) EU 일 EU-일본 제8차 경제 연대협정(EPA)협상 (12.8-12, 도쿄)	9	10 WTO WTO 총회(12.10-11, 제네바) 한 기타 한-베트남 FTA 타결 (12.10)	11 EU EU 의회 위원회 총회 (12.11, 브뤼셀) 한 기타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12.11-12, 부산)	12 EU EU 국제관계 위원회 회의(12.12-15, 브뤼셀)	13
14	15 EU EU 의회 위원회 총회 (12.15-18, 스트라스 부르) EU EU 의회 본회의 (12.15-18, 스트라스 부르)	16 WTO 무역정책 리뷰 : 미국(12.16-18)	17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 미 미국, 한국, 말레이시아, 오만, 대만, 베트남산 특정 강철 못 덤핑 예비판정	18 EU EU 이사회 회의 (12.18-19, 브뤼셀)	19	20
21	22 한 기타 한-뉴질랜드 FTA 가 서명(12.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01 통상 캘린더

2015/JANUARY

한: 한국 미: 미국 WTO: WTO EU: EU
중: 중국 일: 일본 기타: 기타

일 Sunday	월 Monday	화 Tuesday	수 Wednesday	목 Thursday	금 Friday	토 Saturday
				1 EU 리투아니아 유로존 가입 및 유로화 사용 개시(1.1)	2	3
4	5 EU EU 의회 위원회 총회 (1.5, 브뤼셀)	6	7	8 EU EU 의회 위원회 총회 (1.8, 브뤼셀)	9	10
11	12 EU EU 의회 위원회 총회 (1.12-15, 스트라스 부르) EU EU 의회 본회의 (1.12-15, 스트라스 부르)	13	14	15	16	17
18	19 EU EU 의회 위원회 총회 (1.19-22, 브뤼셀) EU EU 국제관계 위원회 회의(1.19, 브뤼셀)	20	21	22	23	24
25	26 EU EU 의회 위원회 총회 (1.26-27, 스트라스 부르)	27	28 EU EU 의회 본회의 (1.28, 브뤼셀)	29 EU EU 의회 위원회 총회 (1.29, 브뤼셀)	30	31

「2015 달라지는 FTA 환경과 우리기업 대응전략」 설명회 개최 안내

KOTRA에서는 한·중FTA, 한·베FTA 타결 등으로 2015년 달라지는 FTA 환경에 대한 우리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활용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사 개요

- 일시 : 1.7(수) 9:30~18:00
- * 1부(오전) 참석자 선착순 100명에게 2015년 KOTRA 중국 관련 신간 도서 무료 증정
- 장소 : KOTRA 본사 국제회의장(B1)

□ 프로그램

시간	발표주제	연사
< 1부 프로그램 : 한- 베트남, 한- 영연방 3개국 FTA 이해와 활용전략 >		
09:00~09:30	□등록	
09:30~09:40	□개회사	
09:40~09:50	□축사	
09:50~10:20	□한-베트남 FTA 주요내용 및 활용전략	하노이 무역관장
10:20~10:50	□한-호주 FTA 주요내용 및 활용전략	시드니 무역관장
10:50~11:20	□한-캐나다 FTA 주요내용 및 활용전략	토론토 무역관장
11:20~11:50	□한-뉴질랜드 FTA 주요내용 및 활용전략	오uckland 무역관장
11:50~12:10	□Q&A	
12:10~13:10	□점심(도시락 제공)	
< 2부 프로그램 : 한중 FTA 이해와 활용전략 >		
13:10~13:30	□인사말	
13:30~14:40	□세션1)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	
	- 한중 FTA 핵심내용 소개 - 한중 FTA와 중국 비즈니스 환경 변화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연구원
14:40~16:30	□세션2) 열리는 시장, 커지는 시장(업종별 전망) * 좌장 : 한우덕 중앙일보 중국연구소장	
	- 농산품 분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공산품 분야	KOTRA 중국사업단
	- 서비스시장 - Q&A 및 패널토론	법무법인 태평양
16:30~16:40	□휴식	
16:40~18:00	□세션3) 우리기업, 무엇을 준비하나? * 진행 : 박한진 KOTRA 중국사업단장	
	- 한중 FTA 비관세장벽 체크포인트	산업연구원
	- 한중 FTA 관세분야(원산지증명, 통관) 이해	신한관세청
	- KOTRA 한중 FTA 활용 지원사업 안내 - 종합 Q&A(2부 프로그램 참석자 전원)	KOTRA 중국사업단

□ 참가신청

- 신청기간 : 2014년 12월 12일 ~ 2015년 1월 6일
- 신청방법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메인화면 중앙의 ‘설명회’ > ‘신청하기’ > ‘2015 달라지는 FTA환경과 우리기업 대응전략’ 클릭 후 하단의 신청서 작성
- 참가비 : 무료
- 문의처 : KOTRA 통상지원총괄팀 백소희(02-3460-7924), 문영상(02-3460-7747)

□ 오시는길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